7. 서면심리 원칙



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되,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, 이해관계인,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(헌법재판소법 제30조).